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7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영리행위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7제1항 신설).

II. 검토의견

안 제34조제10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항에서

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검토·자문·제작 등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제1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의 제11항에 따른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34조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 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기 전’에 출제위원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과세정보 요청 목적을 정비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 관련 절차를 통해 출제위원이 지정 또는 위촉되고, 그 이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 금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절차의 흐름에 따라 조문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교육부와 협의한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신 설> 제64조(벌칙) ①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신 설>	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⑬ 국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4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제1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 ----- ----- ----- 1.----- 2.----- ⑫-----제11항에 따라 ----- ----- ----- 제64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u>교육부장관의</u>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Ⅲ. 관계기관 의견 : 법무부 및 교육부

법무부는 공정한 수능 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재 및 자료의 집필·검토·자문·제작 등”이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등’이라는 문언의 존재로 처벌 대상 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서에 반영하였음.

(전문위원 이 화 실)